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**아동·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**

제출자	국무위원 정영애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1. 의결주문

아동·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제재로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하며,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지 : 별도조지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2. 1. ○○. ~ 2. ○○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1 -

대통령령 제 호

아동·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아동·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중 “제1조제1항제5호에”를 “제11조제1항제5호에”로 한다.

제38조제2항 중 “가해제”를 “임시해제”로 한다.

별표 2 팀원 및 전문가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“전공한 후 아동·청소년, 여성,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”을 “전공한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란 제2호 중 “취득한 후 아동·청소년, 여성,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”을 “취득한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아동·청소년, 여성,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

수로 한다. 단,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
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)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및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은 피해아동·청소년 등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4호, 제11조제5호,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·청소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	제14조(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11조제1항제5호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38조(보호관찰의 종료) ① (생략)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종료의 신청,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·제	제38조(보호관찰의 종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

2항·제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부작명령의 가해제”는 “보호관찰의 종료”로 본다.	----- -----입시해제 -----.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아동청소년성보호과	
연락처	02-2100-6405